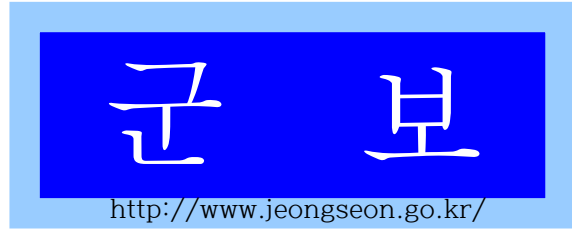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5호 2021. 9. 1.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053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 정선군 공고 제2021-1054호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동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14
- 정선군 공고 제2021-1068호 정선교육지원청 옆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17
- 정선군 공고 제2021-1087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053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변경 : 정선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안 제3조)
 - 조달단가, 재료비 포함 등의 기준에 따라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
- 광고의 비용(안 제4조)
 - 주소정보안내도 등에 광고 시 무료(지방자치단체, 공익광고 등) 및 유료(군수가 별도 산정) 기준 규정

-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등 주소정보 생활화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 마련
-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정선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 가입 근거 마련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안 제13조)
 -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행사 및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 홍보·교육 규정 마련
- 위탁(안 제14조)
 -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정보공사·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업무 위탁 규정 마련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1. 8. 19. ~ 2021. 9. 8. (20일)

6.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수)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민원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184), 팩스(033-560-2407)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민원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정선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정선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정선군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 2.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 5. 그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정선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정선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 3. 토의 및 진행사항
-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 ~ ⑥ 생략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 ④ 생략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 ⑥ 생략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 단위로 한다.

⑦ 생략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 ⑥ 생략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 ⑫ 생략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 나. 실내 위치의 안내
 -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 4. ~ 6. 생략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 ⑤ 생략

-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1054호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동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동 설비의 파손 감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내부 및 외부에 고정식 CCTV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동 CCTV설치
2. 사업목적 :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동 설비의 파손 감시 및 안전사고 예방 감시
3. 시 행 청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4.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동 내부 및 외부
 - 설치대수 : 6대
5. 행정예고 기간 : 2021년 8월 18일 ~ 9월 7일(20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21년 8월 18일 ~ 9월 7일(20일간)
7.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8.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로 1047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 전 화 : 033)560-2942

○ 팩 스 : 033)560-2109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동 내부 및 외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3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 제출자 :
 주 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1068호

정선교육지원청 옆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정선교육지원청 옆 공영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 및 차량, 주차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정 선 군 수

- 1. 행정예고 할 내용 : 정선교육지원청 옆 공영주차장 CCTV 설치
- 2. 설치 목적 : 정선교육지원청 옆 공영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 시민들의 재산(차량) 및 주차시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의자 규명을 위해 주차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3. 설치 예정장소

위치	주 소	CCTV 대수	관제장소	비고
정선교육지원청옆 공영주차장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99-1번지 일원	5대	주차관리동	신규 설치

주 : 구축대상 CCTV 수량은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4. 관련 근거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8. 24. ~ 2021. 9. 13. (20일간)

7. 의견제출 방법

가. 「교육지원청 옆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3.까지 의견서를 정선군 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3-560-2174)

다. 의견제출 기간 : 2021. 8. 24. ~ 2021. 9. 13. (20일간)

라.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마.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정선군청(참조 : 안전과)

- 주 소 : (우) 26121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지도담당

- 전 화 : 034-560-2512

- 팩 스 : 033-560-217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정선군 공고 제2021-1087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 나. 관련 기존 조문 일체 정비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공모,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규정 (안 제3조 ~ 제6조)
- 나.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무기등기 등을 규정(안 제7조 ~ 제8조)
- 다.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규정(안 제9조)
- 라.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20조)
- 마.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관련 사항 규정(안 제21조)

4. 개정 규칙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1. 8. 30. ~ 2021. 9. 23.(25일)

6. 의견제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0일 (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획관

- 연락처 : 전화(033-560-2229), 팩스(033-560-2592)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표준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정선군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2. 지원대상사업
-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4. 지원 및 선정절차
- 5. 수행 일정
-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제공모인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교부조건) 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 3. 항공기 : 10년
-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총무행정관
- 2. 복지과장
- 3.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라. 시민단체 대표
 -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
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
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
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
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
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
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¹⁾	명칭	면적(m ²)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정선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¹⁾	명칭	면적(m ²)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 3. 담보의 제공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 3. 항공기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 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조례(안)

○○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1. 보건·사회: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 2. 문화·체육: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 3. 일반행정: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1.
- 2.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 2.

②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2. 지원대상사업

-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4. 지원 및 선정절차
- 5. 수행 일정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재공모인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2.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 3. 항공기 : 10년
 -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장

2. ○○국장

3.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00. 0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